

일본의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규 및 정책

마쓰오 카즈히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특집]

2012년도 Global Legal Issue는 최근 사회적 의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공생발전'에 관한 다양한 국가의 법제를 주제별로 다룰 계획입니다. '공생발전'은 '자본의 책임'과 '상생번영'이 중시되는 시장경제모델의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연재순서]

- 고용관계에서의 평등확립을 위한 법제
- 노인복지 관련법제 - 독일, 프랑스, 중국
- 재창업, 재취업의 기회보장을 위한 법제
-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법제
- 소규모 사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
- 미국, 일본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법제
-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제

I. 서 론

II. 상공회·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지원

1.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2.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사업자의 지원

III.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설비투자지원

1. 설비자금대부사업
2. 설비대여사업

IV. 소규모 사업자 공제 제도

1. 제도의 개요
2. 최근의 움직임

V. 결 론

I. 서론

일본의 거의 모든 기업이 소규모기업¹⁾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들 중 소규모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다음 [표1]을 참조), 지역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자원이나 기술의 활용, 일자리 제공 등 지역에 밀착된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일본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많은 공헌을 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²⁾

- (1) 사업주 본인이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기획부문이 현저히 미약하므로 경영환경의 변화나 시장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점
- (2) 가계와 영업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경영내용을 확실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융자신청이나 세무신고에 지장이 생기는 등 경영의 현대화를 늦추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 (3) 자본축적이 미흡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자금조달력이 약한 점
- (4) 설비자금 조달에 어려움 등으로 인해 설비의 근대화를 비롯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의 근대화가 지연되어 있는 점
- (5) 개인사업자가 많아 기업의 발전, 쇠퇴가 한 개인에 크게 의존하므로 경영이 불안정해지는 점
- (6) 특정한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

1) 이 글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더 소규모의 기업(제조업 기타에 있어서 종업원 20명 이하, 상업·서비스업에 있어서 종업원 5명 이하의 영세한 기업. 본문 [표1]의 주2 및 주3을 참조)을 가리킨다. 참고로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은 주로 중소기업청에 의한 정책에서 그 대상을 정한 “원칙”으로 되어 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기업”의 기준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각호 및 동조 제5항, 또한 중소기업청의 웹사이트(<http://www.chusho.meti.go.jp/soshiki/teigi.html>)를 참조. 또 일본법의 원문을 열람함에 있어서는 일본정부의 정보제공시스템(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http://law.e-gov.go.jp/cgi-bin/idxsearch.cgi>)을 이용할 수 있다.

2)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상 곤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평성23(2011)년도 중소기업정책총람(中小企業施策總覽)”, 176면을 참조. 같은 책은 중소기업청 웹사이트(<http://www.chusho.meti.go.jp/pamflet/souran/2011/index.html>)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1] 산업별·규모별 기업수 (민영, 비일차산업, 2009년)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		합계		
	기업수	구성비 (%)	소규모기업		기업수	구성비 (%)	기업수	구성비 (%)	
기업수			구성비 (%)						
광업, 채석업 등	2,059	99.8	1,844	89.4	4	0.2	2,063	100.0	
건설업	519,259	99.9	499,167	96.1	280	0.1	519,539	100.0	
제조업	446,499	99.5	394,281	87.9	2,036	0.5	448,535	100.0	
전기, 가스, 수도업	786	96.7	528	64.9	27	3.3	813	100.0	
정보통신업	49,503	97.6	34,526	68.1	1,222	2.4	50,725	100.0	
운수업, 우편업	81,373	99.7	62,361	76.4	251	0.3	81,624	100.0	
도매업, 소매업	1,047,079	99.6	869,196	82.7	4,224	0.4	1,051,303	100.0	
	도매업	241,917	99.3	175,592	72.1	1,693	0.7	243,610	100.0
	소매업	805,162	99.7	693,604	85.9	2,531	0.3	807,693	100.0
금융업, 보험업	34,672	99.3	33,546	96.0	258	0.7	34,930	100.0	
부동산업, 물품임대업	352,548	99.9	345,065	97.8	303	0.1	352,851	100.0	
학술연구, 전문서비스업	203,060	99.7	174,375	85.6	582	0.3	203,642	100.0	
숙박업, 음식서비스업	604,050	99.8	524,811	86.7	936	0.2	604,986	100.0	
생활관련서비스업 등	404,764	99.9	373,089	92.1	543	0.1	405,307	100.0	
교육, 학습지원업	110,895	99.9	100,213	90.3	124	0.1	111,019	100.0	
의료, 복지	194,822	99.9	143,584	73.6	243	0.1	195,065	100.0	
복합서비스업	3,617	99.9	3,604	99.6	2	0.1	3,619	100.0	
기타 서비스업	146,278	99.4	105,171	71.5	891	0.6	147,169	100.0	
비일차산업 합계	4,201,264	99.7	3,665,361	87.0	11,926	0.3	4,213,190	100.0	

1. 기업수=회사수+개인사업소(단독사업소 및 분사, 본점)
2. 중소기업이란 상용고용자 300명 이하(도매업, 서비스업은 100명 이하, 소매업, 음식점은 50명 이하) 또는 자본금 3억 엔 이하(도매업은 1억 엔 이하,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은 5,000만 엔 이하)의 회사를 가리킴.
3. 소규모회사란 상용고용자 20명 이하(도매업, 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은 5명 이하)의 회사를 가리킴.
4. 소규모기업의 구성비는 전 기업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5. 산업분류는 2007년 11월에 개정된 것에 의함.
6. 위 표의 기초가 된 경제센서스-기초조사에서는 (1) 상업·법인등기 등의 행정기록을 활용하여 사업소, 기업의 파악범위를 확대시켰으며, (2) 분사 등 사업주가 지소 등의 정보도 일괄적으로 보고하는 '분사등일괄조사'를 도입하였으므로 과거의 중소기업백서의 부속통계자료의 "사업소·기업통계조사"에 의한 결과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출처] "중소기업백서 2012년도" 부속통계자료 1표(동 백서는 웹사이트(http://www.chusho.meti.go.jp/pamflet/hakusyo/H24/PDF/h24_pdf_mokuji.html))에서 열람가능)

최근에 나온 기업의 도산동향에 관한 조사를 보면 도산 건수 자체는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채금액 5,000만엔 이하의 "영세도산"은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의 영세기업 도산은 5,923건, 전체기업의 도산 비율로 보면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같은 조사에 의하면 도산의 주된 요인으

로서 “방만경영”이 전년도보다 줄어든 반면에 “불황형” 도산이 4925건으로 2006년도 이후 6년 연속 증가하였다.³⁾ 이와 같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둘러싼 현상은 양호하지 않으며 그만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층 더 충실한 소규모 기업시책이 요청된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일본에 있어서 소규모사업자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구되고 있는 각종 시책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II. 상공회·상공회의소 등을 통한 지원

1.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

상공회, 상공회의소는 각각 상공회법,⁴⁾ 상공회의소법⁵⁾에 기초하여 설립된 인가법인(認可法人)⁶⁾이다. 일본 전국에 상공회는 1,719곳, 상공회의소는 514곳이 있으며, 상공업의 종합적 개선발전을 도모함과 함께⁷⁾ 사회일반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종합경제단체이다.⁸⁾

2.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에 의한 소규모 사업자의 지원

소규모 사업자 지원촉진법⁹⁾은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가 그 기능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의 개선·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기반의 충실함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1조 참조).

3) 제국데이터뱅크「특별기획: 영세기업의 도산동향 조사」에 의함. 이 조사보고서는 아래 URL로 열람가능(PDF 파일). <http://www.tdb.co.jp/report/watching/press/pdf/p120603.pdf>

4) 商工会法 (昭和三十五年五月二十日法律第八十九号). 昭和35년은 1960년임.

5) 商工会議所法 (昭和二十八年八月一日法律第四百四十三号).

6) 인가법인은 특별한 법률에 기초하여 수를 한정하여 설립되고, 그 설립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일부 예외가 있음). 상공회, 상공회의소의 인가는 경제산업대신(經濟産業大臣, 경제산업성의 장관에 상응)의 인가를 받는다(상공회법 제23조, 상공회의소법 제27조 참조).

7) 상공회법 제1조 참조.

8) 상공회 내지 상공회의소의 개요에 대하여 각주 2)의 “중소기업시책총람” 178~179면을 참조.

9) 商工会及び商工会議所による小規模事業者の支援に関する法律 (平成五年法律第五十一号). 平成 5년은 1993년임.

이러한 목적 하에 경제산업대신(經濟産業大臣)이 상공회 등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립하고(동법 제3조 참조) 이를 크게 나누어서, 1) 경영개선 보급사업, 2) 기반시설사업, 3) 소규모 사업자 경영개선 자금융자의 3가지 사업이 실시된다.

1) 경영개선 보급사업(동법 제4조)

상공회 및 상공회의소는 경영의 개선을 보급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영지도원” 등을 두고 각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상담·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세무사회와 협력하여 세무에 관한 지도도 행하고 있다.

(1) 경영지도원에 의한 상담·지도

각 기초지방자치단체¹⁰⁾의 상공회나 상공회의소에 배치된 경영지도원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유익한 금융, 세무, 노동관계, 경리 등 모든 분야에 관한 상담을 받고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전문성이 높은 문제나 업종고유의 문제 또는 광역적인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 지자체¹¹⁾의 상공회연합회에 광역지도센터가, 상공회의소 안에 전문센터가 각각 설치되어 있으며, 전문경영지도원이나 위탁전문지도원이 상담을 받고 있다.

게다가 기술·경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광역 지자체의 상공회연합회 등에 등록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를 파견하는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Expert Bank).

한편 경영지도원이 소규모 사업자의 상담을 받기 위하여는 새로운 경영관리에 관한 기법 등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상공회, 상공회의소의 경영지도원 등을 대상으로 전국통일의 지도요령에 의한 인터넷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영지도원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 기장(記帳)지도

소규모 사업자 중에는 경영과 가계가 확실히 분리되지 않은 곳이 많아서 기업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상공회 및 상공회

10) “町·村”을 가리킨다. 시(市)보다 한 단계 작은 행정단위이며, 한국의 ‘군, 구’와 유사한 정도의 규모의 지방으로 보면 된다.

11) 대략 한국의 특별시나 광역시 내지 도(道)에 상응하는 행정단위이며, 보통 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통칭된다.

의소에 기업기장(企業記帳)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기장전임직원 및 기장지도원이 배치되어 있다. 기장전임직원 등은 소규모 사업자의 기장을 지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기업을 위하여 기장사무의 대행도 실시한다.

또한 기장의 자동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상공회 내지 상공회의소에 매일의 매출액, 구입전표 등을 정리해서 달마다 정해진 기간에 지참하면 컴퓨터에 입력되고, 월말 시점의 원장 시산표 등이 정리되고 기업에 제공되는 시스템이다.¹²⁾

(3) 상담·지도 외의 주된 경영개선보급사업

경영지도원 등의 상담, 지도 외에도 지역진흥, 판로개척, 창업지원 등을 꾀하여 상공회, 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 ① 소규모 사업자 신사업(新事業) 전국전개 지원사업(지역자원활용 신사업∞전국전개프로젝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전국적인 판로개척, 관광개발 등 지역의 상품이나 매력을 전국으로 발신하는 노력 등에 대하여 폭넓은 지원을 실시
- ② “우리 동네로부터”관(館) 사업¹³⁾: 도쿄 유라쿠초(有楽町)에 설치된 판로의 거점인 “우리 동네로부터”관에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개발된 특산품이나 신상품을 전시하여 판로개척의 지원을 실시함과 함께 소비자의 요망, 특산품의 수요동향의 파악 등을 위한 모니터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③ 젊은이 후계자 육성사업: 소규모 사업에 종사할 청년이나 여성 내지 젊은 후계자를 대상으로 그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등을 개최함과 함께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
- ④ 국제화 추진사업: 소규모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하이에 주재원을 두고 국내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수집·제공

2) 기반시설사업(동법 제5조)

소규모 사업자 지원촉진법은 상공회, 상공회의소를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의 개선·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주체로 삼아 상공회 등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등

12)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지도체제의 전체구조는 각주 2) “중소기업시책총람” 181면[표1-11-4]에서 일람할 수 있다.

13) 원문으로는 “むらからまちから館事業”임. 동 사업으로 개설된 매장에 대하여 아래 웹사이트(<http://murakara.shokokai.or.jp/>)를 참조.

에 기여할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기반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원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사업대상이 되는 시설은 (1) 공동공장, 공동점포 등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위한 터가 되는 시설, (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설, (3) 다목적 홀, 주차장 등 소규모 사업자의 집객력 향상에 이바지되는 시설 등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지원촉진법상 인정을 받은 기반시설계획에 기초하여 기반시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각종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 (1) 중소기업 활력 향상사업에 의한 보조금(동법 제7조): 상가 등이 지역사회
의 중요한 요소로서 실시하는 지역자원의 활용·농상공업의 연계 등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는 집객력 향상 또는 매출액 증가의 효과가 있는 상가활성화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 (2) 금융상 지원조치
 - ① 고도화(高度化)융자(동법 제7조): 상공회, 상공회의소 또는 제3섹터(공익법
인·주식회사)가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아래의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기반정비기구¹⁴⁾의 무이자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상가정비 등 지원사업: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 또는 이와 함께
대규모 슈퍼형의 상업점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
 - 지역산업 창조 기반 정비사업: 지역산업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시설의 설
치·운영을 하는 사업
 - ② 채무보증(동법 제8조 내지 제17조): 상공회 내지 광역 지자체의 상공회연합
회 또는 상공회의소가 기반시설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기반시설사업에 필요
한 설비자금을 민간 금융기관 혹은 고도화융자 실시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경
우에 당해 차입에 관한 채무를 각각 전국상공회연합회 혹은 일본상공회의소
가 보증
 - ③ 중소기업 신용보험법의 특례(동법 제20조): 기반시설계획 또는 연계계획에 따
라 기반시설사업 또는 연계사업을 실시하는 일정한 공익법인을 중소기업신용
보험법상 중소기업자로 간주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행하는 기반시설사업 또는

14) 중소기업기반정리기구는 경제산업성이 관할하는 독립행정법인이며, 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 실시기
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 기구에 대하여 웹사이트(<http://www.smrj.go.jp/about/index.html>)를 참조.

연계사업의 실시에는 필요한 자금의 차입을 보험의 대상으로 함.

(3) 세제상 지원조치(동법 부칙)

- ① 법인세, 사업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상공회 등의 비영리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영리사업소득에 대하여도 상공회 등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영리사업에서 제외되고 법인세, 사업세, 사업소세가 면제됨.

(기반시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 공동점포, 공동공장을 설치하여 소규모 사업자에게 저렴한 요금에 임대하는 사업
 - 새로운 특산품의 개발, 판로개척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업
- ② 특별토지보유세¹⁵⁾의 비과세: 제3섹터가 고도화용자를 받고 기반시설사업을 실시할 경우에 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특별토지보유세가 면제된다.

[표2] 세제상 지원조치

세의 종류/실시주체	상공회 등이 스스로	재단 형태의 제3섹터	회사 형태의 제3섹터
법인세	○	×	×
사업세	○	×	×
사업소세	○	×	×
특별토지보유세	×	○	○

(○ : 비과세)

3)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소규모 사업자 경영개선 자금 융자

소규모 사업자는 경영내용이 반드시 안정적이지 않고, 담보·신용력이 미흡하다는 사정 때문에 사업의 생명선인 금융 지원을 받는 데 애로사항이 심각한 형국이다. 본 융자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상공회, 상공회의소, 광역 지자체의 상공회연합회의 경영지도원이 경영지도를 함으로써 일본정책금융공고가 무담보·무보증인으로 융자를 실시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1973

15) 특별토지보유세는 지방세법에 기초하여 토지의 소유, 취득에 대하여 그 토지가 있는 시(市)·정(町)·촌(村)에서 소유자 또는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일반적으로 토지의 취득 시부터 10년간에 한하여 부과된다.

년 제조).¹⁶⁾

(1) 대부대상자

소규모 사업자에 관한 용자대상요건

- ①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상업·서비스업에 있어서는 5명 이하, 제조업 기타에 있어서는 20명 이하의 법인·개인사업주
- ② 원칙적으로 6개월 이전부터 경영지도를 받는 자로, 경영지도원에 의한 경영지도에 기초한 설비·시설의 근대화·판매방법의 개선, 기타의 경영 또는 기술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려 하는 자임.
- ③ 최근 1년 이상 동일한 회의소 등의 지구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자(다른 회의소 등의 지구에서 옮겨온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통산할 수 있음)
- ④ 소득세, 법인세, 사업세 또는 지자체의 주민세에 대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한 당해 의무납세액을 납부한 자
- ⑤ 상공업자이자 일본정책금융공고의 비용자대상업종에 속하지 아니한 자

(2) 대부조건

- ① 대부한도액: 1,500만 엔
- ② 대부금리: 1.75%(2012.7.11. 시점)¹⁷⁾
- ③ 대부기간: 설비자금 10년 이내(거치 2년), 운영자금 7년 이내(거치 1년)
- ④ 담보 등: 무담보, 무보증인

Ⅲ.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설비투자지원

소규모 사업자는 창업을 하거나 생산성 향상 등 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설비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신용력이나 자금조달력이 약하기 때문에 설비도입의 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다.

16) 일본정책금융공고에 관하여는 일본정책금융공고법 및 동 시행령 또한 동 공고의 웹사이트(<http://www.jfc.go.jp/>)를 참조.

17)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대부의 금리는 웹사이트(http://www.jfc.go.jp/k/riritsu/riritsu_1ran_m.html) 참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등 설비도입 자금조성법¹⁸⁾은 그러한 소규모 사업자 및 창업자의 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설비도입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소규모 사업자 설비자금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설비자금 대부사업 및 설비대여사업의 2가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1. 설비자금대부사업

설비자금대부사업은 대여기관(각 광역 지자체에 설치된 중소기업지원센터)이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 창업 및 경영기반의 강화에 필요한 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설비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이다.

1) 대부대상자: 대부대상이 되는 소규모 사업자 등 또는 창업자로, 다음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임.

- (1) 대상설비의 도입에 관한 자금을 은행 등 일반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받기가 어렵고 대부금의 상환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당해 회계연도에 설비대여사업을 이미 이용하는 자 또는 동시에 이용하는 자에 있어서는 설비자금대부사업의 대여금액의 상한에 대한 이용금액의 비율과 설비대여사업의 대여금액의 상한에 대한 이용금액의 비율의 합계가 100%를 상회하지 공않을 것
- (3) 공서양속(公序良俗)의 관점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업종, 기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 광역 지자체의 지사가 인정한 업종에 관한 사업을 위한 설비도입이 아닐 것
- (4) 사업개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창업자는 원칙적으로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의 경영지도원에 의한 경영지도를 6개월 정도 이전부터 받고 있을 것

2) 대부대상설비

대부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토지 및 건물(소매업 등의 점포의 내장공사 및

18) 원문으로는 小規模企業者等設備導入資金助成法(昭和三十一年五月二十二日法律第百十五号)임.

외장공사를 제외), 임대용 물품 등 기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각 광역 지자체 지사가 인정하는 설비는 제외된다.

- (1) 창업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 (2)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영기반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설비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3) 그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액 또는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액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4) 공해방지 등을 위한 설비로서 정해진 설비

3) 대부금액 및 대부비율

각 차주의 대부금액은 50만 엔 이상 4,000만 엔 이하이며, 대부비율¹⁹⁾은 1/2 이내이다. 다만 창업자에 관하여는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창업자의 경우 50만 엔 이상 6,000만 엔 이하, 그 외의 창업자의 경우 25만 엔 이상 4,000만 엔 이하이다. 또한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상 중소기업 경영자원 활용계획에 따라 설비를 도입하는 자에 관하여는 대부금액은 66만 엔 이상 6,000만 엔 이하로 대부비율은 2/3 이내, 중소기업자와 농림어업자와의 연계에 의한 사업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상공동연계사업계획상 인정기업자 및 기업입지의 촉진 등에 의한 산업집적의 형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승인기업자에 관하여는 대부한도금액은 6,000만 엔, 대부비율은 2/3 이내이다.

4) 대부이율 및 상환기간

자금의 대부는 무이자이다. 상환기간은 7년 이내(공해방지시설에 관하여는 12년 이내)이며, 거치 기간 1년 이내의 연부, 반년부 또는 월부균등 상환이다.

5) 담보 또는 보증인

대부를 받기 위하여는 연대보증인 또는 물적담보(저당권, 양도담보 등)가 필요하다.

19) 대부비율이라 함은 사업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비율임.

2. 설비대여사업

설비대여사업은 소규모 사업자가 창업 및 경영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에 대하여 대여기관이 그 소규모 사업자를 대신하여 설비를 구입하여 대여(할부 판매, 리스)하는 것이다.

1) 대여대상자

대여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또는 창업자로 다음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다.

- (1) 대상 설비의 도입에 관한 자금을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기 어렵고 할부료 및 리스료의 지불이 확실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당해 연도에 설비자금대부사업을 이미 이용하는 자 또는 동시에 이용하는 자에 있어서는 설비자금대부사업의 대부금액의 상한에 대한 이용금액의 비율과 설비대여사업의 대여금액의 상한에 대한 이용금액의 비율의 합계가 100%를 상회하지 않는 경우
- (3) 공서양속의 관점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업종, 기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각 광역 지자체의 지사가 인정한 업종에 관한 사업을 위한 설비도입이 아닌 경우
- (4) 사업개시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창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공회, 상공회의소 등의 경영지도원에 의한 경영지도를 6개월 이전부터 받고 있는 경우

2) 대여대상설비

설비대여의 대상설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토지 및 건물, 임대용 물품 등 기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각 광역 지자체 지사가 인정하는 설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 창업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 (2) 소규모 사업자 등의 경영기반의 강화를 위하여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설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① 그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부가가치금액 또는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금액이 일정 이상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② 공해방지 등 설비로서 인정된 설비. 다만 창업자 일인의 설비대여를 하는 설비의 가격의 합계금액은 100만 엔 이상 6,000만 엔 이하(창업 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창업자의 경우에는 50만 엔 이상 3,000만 엔 이하)이다.

3) 할부료·리스료

- (1) 할부료: 대여설비의 구입가격에 대하여 거치기간 1년 이내의 연부, 반년부 또는 월부로 지불하며, 할부기간 중에는 대여설비의 구입가격의 미지불 상당금액에 대하여 연율 3.0% 이하 정도의 이율의 손료를 가산해서 지불한다.
- (2) 리스료: 리스의 기간 안에 대여설비의 구입가격에 대하여 리스 기간마다 정한 월액 리스료율(연 1 내지 3% 정도)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지불한다.

4) 할부·리스기간

- (1) 할부기간: 7년 이내(공해방지시설의 경우에는 12년 이내)
- (2) 리스기간: 3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여설비의 이용연수에 따라 결정됨.

5) 보증금 및 보증인

할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할부료의 1/10 이내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된다(리스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또한 할부와 리스 양쪽 다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담보가 필요할 경우도 있다.

IV. 소규모 사업공제 제도²⁰⁾

1. 제도의 개요

소규모 사업자는 경영기반이 취약하며 경영환경의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고 사

20) 소규모 사업공제 제도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동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독립행정법인)의 웹사이트(<http://www.smrj.go.jp/skyosai/>)를 참조.
또한 각주 2)의 “중소기업시책총람” 193~195면에 제도의 전체상을 볼 수 있다.

업상 리스크가 크다. 장래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자가 퇴직, 폐업 등으로 수입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 생활의 안정이나 사업의 재건 등을 위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한 공제제도로서 소규모 사업공제 제도의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사업 공제법²¹⁾이다.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의 경영자가 폐업이나 은퇴에 대비하는 제도이며, 말하자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퇴직금제도이다.²²⁾ 공제계약자가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 부금을 납부하고 동 기구가 이를 운용하다가 사업의 폐지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 공제금 등을 지급한다. 1965년에 제도가 만들어지고 2011년 3월 말 시점의 가입자는 약 121만 명이며, 전국의 소규모기업의 30% 정도가 가입하고 있다.

2. 최근의 움직임

2010년 4월 소규모 사업 공제법을 개정하는 법률이 2011년 초부터 시행되었다. 이 개정에 따라 종전의 가입대상자 뿐만 아니라 새로 개인사업자의 배우자나 후계자 등 “공동경영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공동경영자”이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주의 친족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 개인사업주가 되기 전의 후계자가 공제에 가입함으로써 충분한 사후의 대비가 가능해졌다.

[표3] 소규모기업공제제도의 내용

가입자격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20명(상업·서비스업은 5명) 이하의 · 개인사업주 · 회사, 기업협회, 협업조합 및 농업의 경영을 하는 농사조합법인의 임원 · 개인사업의 공동경영자	
부금	1,000엔에서 7만엔(월, 500엔마다 조절)	
공제사유 등	A 공제사유	· 개인사업의 폐지(사망 등 포함) · 회사 등의 해산을 의하여 임원을 그만 둔 경우 · 공동경영자가 관계된 개인사업의 폐지 · 공동경영자의 사망 등에 의한 사업의 폐지

21) 원문으로는 小規模企業共済法(昭和四十年六月一日法律第百二號)임.

22) 각주2) “중소기업시책총람” 192면.

공제사유 등	B 공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등 임원의 질병, 부상에 의한 퇴직(사망을 포함) · 노령급부(65세 이상으로 부금납부기간 15년 이상의 자) 			
	준 공제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고 임원이 안 됨 · 배우자 또는 자식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 · 회사 등 임원의 임의퇴직 			
	해지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달 이상의 부금체납 · 회사로 조직변경하고 소규모기업의 임원이 됨 · 임의해지 			
공제금 등의 금액의 예(구금 1,000엔/월의 경우) (단위 : 1,000엔)					
부금납부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부금합계	120	180	240	360	
A 공제금	129	201	279	435	
B 공제금	126	194	266	421	
준공제금	120	180	242	383	
해지수당금	102	167	240	3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제금은 B공제금의 91%(부금합계액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부금하계액)이 됨. · 해지수당금은 부금납부기간에 따라 부금의 80%에서 120%의 범위, 부금납부월수가 290달(20년) 미만의 수령액은 부금합계액을 하회함. 					
공제금의 분할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 : A 공제사유 또는 B 공제사유인 것 (공제계약자 사망의 경우를 제외). 공제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을 수도 있음. · 공제사유 발생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것. · 지급대상공제금의 금액이 300만엔 이상인 것. (일부의 분할을 희망할 경우 330만엔) · 지급기간 : 10년 또는 15년 · 지급시기 : 매년 2월, 5월, 8월, 11월의 4번 				
세법상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금 : 전액 소득공제 · 공제금 : 퇴직소득으로 취급 (해지수당은 "간주 해지" (준공제) 및 65세 이상의 임의 해지 외에는 일시소득으로 취급) · 분할공제금은 공적연금 등으로 공제. 				

계약자 대출 제도	<p>[일반대출]</p> <p>강이하고 신속히 사업자금 또는 사업에 관련된 자금을 대출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액 : 부금총액에 부금납부월수에 따라 0.7 내지 0.9를 곱하여 얻은 금액(10만엔 이상으로 5만엔의 배수가 되는 금액)과 1,000만엔 중 더 작은 금액 · 대출이율 : 연 1.5% · 대출기간 : 6개월, 12개월, 24개월(105만엔 이상), 36개월(305만엔 이상) 또는 60개월(505만엔 이상) · 상환방법 : 일시상환(24개월, 36개월 또는 60개월의 경우 반년 할부균등) · 담보, 보증인 : 필요없음.
	<p>[부상·질병·재해시 대출]</p> <p>일정기간의 입원 또는 재해 등 때문에 경영의 안정에 지장이 생긴 때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p> <p>[창업, 전업 시·신규사업개시 시 등 대출]</p> <p>신규개업, 전업을 하는 때에 필요한 자금, 본인 사업의 다각화, 후계자의 신규개업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p> <p>[복지대응대출]</p> <p>자택이나 사업소의 베리어프리화, 복지기기 구입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p>
	<p>[긴급경영안정대출]</p> <p>경제환경의 변화 등에 기인한 일시적 업황악화 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경영에 지장이 생긴 때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p> <p>[사업계승대출]</p> <p>사업계승(사업용 자산 또는 주식 등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한도액 : 부금총액에 부금납부월수에 따라 0.7 내지 0.9를 곱하여 얻은 금액(50만엔 이상으로 5만엔의 배수가 되는 금액)과 1,000만엔 중 더 작은 금액 · 대출이율 : 연 0.9% · 대출기간 : 36개월 또는 60개월 · 상환방법 : 반년할부의 원금균등할부상환 · 담보, 보증인 : 필요없음. <p>※복수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의 상한은 1,500만엔임.</p>
	출처) 각주2) “중소기업시책총람” 193면 이하, 도표1-11-11

V. 결론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거품경제가 붕괴되자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사회 전반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 아래 기업이나 개인이나 가릴 것 없이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영세사업자 보호의 쇠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2000년 6월의 대규모소매점포법²³⁾ 폐기였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각 소규모 사업자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직원들의 삶을 지켜나가야 된다.

위에 소개한 몇 가지 법제는 바로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주된 제도들이다. 일본 경제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자들의 활성화가 필수적인 요인인 만큼 위 법제들의 유효적인 이용이 기대되는 바이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지원 법제가 일본의 장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까닭이다.

23) 원문으로는 大規模小売店舗法(昭和四十八年十月一日法律第九号). 동법은 “소비자 이익의 보호에 배려하면서 대규모소매점포의 사업활동을 조절함으로써 그 주변의 중소소매업자의 사업활동의 기회를 적정하게 보호하며, 소매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1998년에 성립된 대규모소매점포입지법(大規模小売店舗立地法、平成十年六月三日法律第九十一号)의 시행(2000.6.1.)에 따라 폐지되었다. 각지의 상가에서 가게가 영업을 하지 못해져서 상가를 구성하는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아버린 이른바 “샤터(덧문)상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도 그 즈음이었다.